해링턴 플레이스 문래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3463-7774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11.1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 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6.11.13.(금)	2026.11.23.(월)	2026.11.24.(화)	2026.11.25.(수)	2026.11.26.(목)	2026.12.02.(수)	2026.12.04.(금) ~2026.12.07.(월)	2026.12.14.(월) ~2026.12.16.(수)

■ **견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 견본주택 관람은 2026.11.20.(금) ~ 2026.11.22.(일), 3일간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분양문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하여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등으로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제 운영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첨, 계약체결 일정은 별도 고지할 예정임)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대상 유·무선 안내는 청약신청 시 입력한 성명 및 연락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당사가 고지하는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합니다.
- 해링턴 플레이스 문래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신청자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관계법령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진단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해링턴플레이스문래.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13.(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4.11.1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 정	2026.11.23.(월)	2026.11.24.(화)	2026.11.25.(수)	2026.11.26.(목)	2026.12.02.(수)	2026.12.04.(금) ~2026.12.07.(월)	2026.12.14.(월) ~2026.12.16.(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4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5.03.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 본인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본인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당첨 가능합니다. (혼인특례 사용하여 청약신청)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12.02.)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3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과 - 38733호(2026.11.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27-1번지 일원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해당없음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3개동, 총 218세대 중 일반분양 218세대

[특별공급 117세대(기관추천 21세대, 다자녀가구 21세대, 신혼부부 32세대, 노부모부양 7세대, 생애최초 15세대, 신생아 21세대 포함)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30년 03월 예정(공정 및 관계법령,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책임준공기한 연장사유 발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000560	01	084.9409A	84A	84.9409	24.7598	109.7007	58.3811	168.0818	24.4907	110	11	11	16	3	7	11	59	51	4
	02	084.9708B	84B	84.9708	25.4618	110.4326	58.4017	168.8342	24.4993	54	5	5	8	2	4	5	29	25	2
	03	084.9894C	84C	84.9894	23.7535	108.7429	58.4145	167.1573	24.5047	54	5	5	8	2	4	5	29	25	2
합 계										218	21	21	32	7	15	21	117	101	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표기방식은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최저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부대복리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주거공용면적을 세대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재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의 대지면적이 인접건물 대지의 영향으로 대지면적이 변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아파트입면 색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사업주체의 계획변경,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84A	84B	84C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1	1	**4**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1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1	1	**4**
	장애인	서울특별시	2	1	1	**4**
		경기도	1	-	-	**1**
	중소기업 근로자		2	1	1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50%)		6	3	3	**12**
	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50%)		5	2	2	**9**
신혼부부 특별공급			16	8	8	**3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2	2	**7**
생애최초 특별공급			7	4	4	**15**
신생아 특별공급			11	5	5	**21**
합 계			**59**	**29**	**29**	**11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타입	총 세대수	동별/라인별	층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2027-06-01	2027-12-01	2028-06-01	2028-12-01	2029-05-01	2029-10-01	입주지정일
84A	110	101동 1, 4호 102동 2호 103동 1호	2층	2	549,160,000	1,094,840,000	1,644,000,000	50,000,000	114,400,000	164,400,000	164,400,000	164,400,000	164,400,000	164,400,000	164,400,000	493,200,000
			3층	4	567,530,000	1,131,470,000	1,699,000,000	50,000,000	119,900,000	169,900,000	169,900,000	169,900,000	169,900,000	169,900,000	169,900,000	509,700,000
			4층	4	579,560,000	1,155,440,000	1,735,000,000	50,000,000	123,500,000	173,500,000	173,500,000	173,500,000	173,500,000	173,500,000	173,500,000	520,500,000
			5층	4	591,910,000	1,180,090,000	1,772,000,000	50,000,000	127,200,000	177,200,000	177,200,000	177,200,000	177,200,000	177,200,000	177,200,000	531,600,000
			6층 이상	96	610,290,000	1,216,710,000	1,827,000,000	50,000,000	132,700,000	182,700,000	182,700,000	182,700,000	182,700,000	182,700,000	182,700,000	548,100,000
84B	54	101동 2, 3호	3층	2	566,770,000	1,093,230,000	1,660,000,000	50,000,000	116,000,000	166,000,000	166,000,000	166,000,000	166,000,000	166,000,000	166,000,000	498,000,000
			4층	2	578,720,000	1,116,280,000	1,695,000,000	50,000,000	119,500,000	169,500,000	169,500,000	169,500,000	169,500,000	169,500,000	169,500,000	508,500,000
			5층	2	591,010,000	1,139,990,000	1,731,000,000	50,000,000	123,100,000	173,100,000	173,100,000	173,100,000	173,100,000	173,100,000	173,100,000	519,300,000
			6층 이상	48	609,450,000	1,175,550,000	1,785,000,000	50,000,000	128,500,000	178,500,000	178,500,000	178,500,000	178,500,000	178,500,000	178,500,000	535,500,000
84C	54	102동 1호 103동 2호	3층	2	566,990,000	1,084,010,000	1,651,000,000	50,000,000	115,100,000	165,100,000	165,100,000	165,100,000	165,100,000	165,100,000	165,100,000	495,300,000
			4층	2	579,000,000	1,107,000,000	1,686,000,000	50,000,000	118,600,000	168,600,000	168,600,000	168,600,000	168,600,000	168,600,000	168,600,000	505,800,000
			5층	2	591,360,000	1,130,640,000	1,722,000,000	50,000,000	122,200,000	172,200,000	172,200,000	172,200,000	172,200,000	172,200,000	172,200,000	516,600,000
			6층 이상	48	609,560,000	1,165,440,000	1,775,000,000	50,000,000	127,500,000	177,500,000	177,500,000	177,500,000	177,500,000	177,500,000	177,500,000	532,500,0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조망권별 등 다양한 조건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마감재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됩니다.
- 분양대금 및 유상옵션 대금(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 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중 일부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입주 전(키불출 전)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 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 건설 사업 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조경시설물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td></tr>
</table>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1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잔여물량 50%에서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재경쟁하며, 이 경우 지역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배점
<table>
<tr><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th><th>점수</th></tr>
<tr><td>계</td><td>100</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3명</td><td>35</td></tr>
<tr><td>2명</td><td>25</td></tr>
<tr><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2명</td><td>10</td></tr>
<tr><td>1명</td><td>5</td></tr>
<tr><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r><td rowspan="2">해당 시·도
거주기간(5)</td><td rowspan="2">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2">-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
</table>
</td></tr>
</table>

		1년 이상 ~ 5년 미만	5	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3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1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7세대

구분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1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따라서, 단독세대 신청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함.**(본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이 없음)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3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1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1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

- 세대주일 것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규제지역 1순위 청약 불가)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
<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70%</td><td>30%</td></tr>
</table>
</td></tr>
</tabl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table>
<tr><td></td><td>
<table>
<tr><td></td><td>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td></tr>
<tr><td>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r><td>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td><td>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td></tr>
</table>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tr><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r><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
</table>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td></tr>
<tr><td>비고</td><td>■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td></tr>
</table>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able>
<tr><td>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td><td>-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td></tr>
<tr><td>공고단지
청약연습</td><td>-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td></tr>
</table>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2.02.(수) ~ 2026.12.11.(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2.02.(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기간	서류 제출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서류 접수 기간	2026.12.04.(금)~2026.12.07.(월) (10:00 ~ 17:00)	• 당사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40 ☎ 02-3463-7774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s://www.해링턴플레이스문래.com)
예비입주자 서류 접수 기간	제출 대상 순번 및 일정 등 별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당첨자(서류제출 대상 순번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신청자격에 맞는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계약체결 불가, 당첨 취소, 부적격당첨자로 관리 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상황에 따라 아래 구비서류 외 추가적으로 자격검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자격검증서류(추가 요청서류 포함)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계약체결 이전)의 기간 이내에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불가)
- 청약신청 시 당첨자의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서류제출 및 계약 안내 등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4항에 해당하고 재당첨제한이 10년인 경우 10년)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제출 대상 순번,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분양 홈페이지(https://www.해링턴플레이스문래.com)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Home'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서약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용도: 당첨자격 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발생일 및 변동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발생일 및 변동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관계, 인적사항 변동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인 경우 생략 가능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청약한 경우(복무기간 명시)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독세대, 동거인인 경우 불인정)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도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관계, 인적사항 변동 포함하여 발급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관계, 인적사항 변동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는 의료법에 의한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의료기관명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등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제출 (서식 견본주택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확인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가구원수 포함 여부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당첨자의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등재된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관계, 인적사항 변동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는 의료법에 의한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의료기관명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또는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된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서(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등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제출 (서식 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관계, 인적사항 변동내용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관계, 인적사항 변동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4.06.19. 이후 출생 예정인 태아가 있어, 출산특례로 청약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는 의료법에 의한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의료기관명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4.06.19.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어, 출산특례로 청약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등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제출 (서식 견본주택에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확인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 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가구원수 포함 여부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당첨자의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등재된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관계, 인적사항 변동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는 의료법에 의한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의료기관명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또는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된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서(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신생아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확인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 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신생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당첨자의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등재된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관계, 인적사항 변동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의 혼인여부 확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가구원수 포함 여부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는 의료법에 의한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의료기관명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또는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된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서(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등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제출 (서식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당첨자	• 본인발급용(용도 : 당첨자격 확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당첨자	•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모든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등 필요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 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전년도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 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 급여신청서(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상기 방식 역시 불가하다면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①,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①,② 해당 직장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의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 대표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및 재직증명서 ② 재무제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①,② 세무서 /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②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필수 제출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필수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접수장소 (견본주택) ② 세무서

※ 상기 소득증빙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상기 소득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제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등)이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구분	확인자격	증빙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 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② 세무서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소득금액증명 ②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③,④ 해당 직장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제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등)이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출산휴가, 휴직했던 분은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직인날인)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② 부동산소유현황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③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④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⑥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서울특별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조회' 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특별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위택스(www.wetax.go.kr) ②, 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www.iros.go.kr / www.gov.kr) ④, ⑤ 행정복지센터 ⑥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추가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 발급 > '부동산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미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정부24 (www.gov.kr)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서약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용도: 당첨자격 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발생일 및 변동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발생일 및 변동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관계, 인적사항 변동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청약한 경우(복무기간 명시)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독세대, 동거인인 경우 불인정)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도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관계, 인적사항 변동 포함하여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관계, 인적사항 변동내용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관계, 인적사항 변동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당첨자	• 본인발급용(용도 : 당첨자격 확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당첨자	•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모든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등 필요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일정 및 계약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간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12.14.(월)~2026.12.16.(수) (10:00 ~ 17:00)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40)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전산검색(주택소유현황, 과거 당첨사실 등) 결과회신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부적격자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일정기간(계약체결 종료일 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책임은 관계법령 및 해당 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	• 본인발급용(용도: 계약체결용 2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신청 불가 - 서류접수 시 1부 제출한 경우 1부만 추가 제출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증빙자료 구비 필요
	○		수입인지(인지세)	본인	• 수입인지 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당첨자	• 본인발급용(용도 : 계약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당첨자	•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과세문서 및 세액의 전자수입인지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PC 및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우 리 은 행	1005-304-978558	우리자산신탁(주)

※ 분양대금은 상기 명시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수납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책임은 관계법령 및 해당 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금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3동 1501호 홍길동 → '01031501홍길동')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 본 공급물건은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남해종합건설㈜,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 및 시공사 효성중공업㈜,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실질적 사업주체는 남해종합건설㈜이며,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에서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는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사 겸 수익자인 남해종합건설㈜이 부담한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부해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 해지되는 경우, 분양계약(공급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본 사업상 시행자(사업주체)의 지위에 기한 우리자산신탁㈜의 모든 행위 및 권리와 의무는 시행위탁사인 남해종합건설㈜에게 별도의 조치 없이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또한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공급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관한 우리자산신탁㈜의 권리와 의무가 남해종합건설㈜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된다.
- 남해종합건설㈜의 신탁계약상 위탁사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남해종합건설㈜는 본 공급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시행위탁사인 남해종합건설㈜와 시공사인 효성중공업㈜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분양대금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근거해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 외 분양계약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분양계약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본 공급물건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겸 시행수탁사인 우리자산신탁(주)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우리자산신탁(주)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우리자산신탁(주)은 신탁계약이 정한 업무범위 내 및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담)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사인 남해종합건설㈜에게 있다. 다만, 관계법령상 시행수탁자에게 부과되어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위탁자 및/또는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시행수탁자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또는 분양계약자와 합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그 내용 또는 효력을 변경·상실시키는 행위,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등을 감면하는 행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및 본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공급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본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사항은 본 공고의 다른 모든 조항에 우선한다.
- 신탁재산의 목록

2026.09.21. 시행위탁자 남해종합건설(주)과 시행수탁사 우리자산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후 변경된 계약을 포함하며,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계약의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에 의한 신탁재산

- 신탁부동산(토지 및 건축예정인 지상건물)
 1. 토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27-1번지 일원 5,940.10㎡
 2. 건축(예정)인 지상건물 : 지하 3층 ~ 지상 29층 / 공동주택 218세대,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 연면적 40,747.7121㎡ (상세개요 변경 가능)
- 신탁계좌의 종류
 1. 분양수입금(공동주택)계좌 2. 분양수입금(근린생활시설)계좌 3. 분양수입금(발코니확장)계좌 4. 대출금상환적립계좌 5. 사업비운영계좌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가능시 총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기간 내 실입주일 또는 입주기간의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

과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적격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개인의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9 기타 안내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에서는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 그 결과를 당첨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당첨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

조의2에 따라 부부 중복 당첨시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됩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①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②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제53조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계좌부활 요청서'(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서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주택법」 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주택법」 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분양권 취득 시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는「주택법」 제48조의2 및「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30년 03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또는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책임준공기한 연장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21.02.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월 2개월전 실입주월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시 입주(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피트니스 1, GX룸 1, 스크린골프 1, 경로당 1, 관리사무소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차대수
지하 1층	2.8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8m 이상	80대
지하 2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	110대
지하 3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	115대

■ **내진설계 관련 사항**

- 본 건축물은「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제5의2호 및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입니다.
-「건축법」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내진Ⅰ등급(진도MMI 등급 Ⅶ (최대지반가속도 : 0.204g))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건축/ 토목 / 기계 / 특수구조	소방 / 전기 / 통신
회사명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지티엘이엔지
감리금액	2,310,000,000원	669,900,000원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시공업체
상호명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	효성중공업(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삼정빌딩)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42 (광산동, 안산빌딩 4층)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 27층 外 (회현동1가, AK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2003236	110111-0647870	110111-6770154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6-104-0001000호	₩273,471,8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아파트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당사가 본 아파트 사업장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결제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또는 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또는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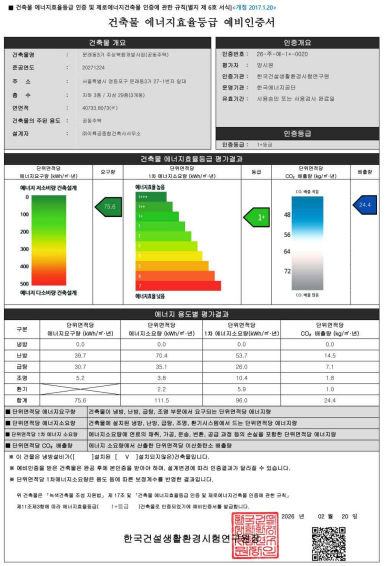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1566-9009)

■ 하자보수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제17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역은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1) 타입별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납부방법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25,000,000	2,500,000	22,500,000
84B	25,000,000	2,500,000	22,500,000
84C	25,000,000	2,500,000	22,500,000

2)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부분적인 확장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확장으로 인한 추가 설치품목에 따른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품질(타사제품 포함)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의 비확장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 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공간과 비확장 공간의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 또는 상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장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일부)또는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 및 환기시스템 배관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형태)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 시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위탁사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 시 대피공간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노출배관(천장, 벽)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의 형태 및 크기는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전열교환기 설치 여부에 따라 주택형별의 발코니 외부 창호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공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 위탁사와 무관합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대금	우 리 은 행	1005-604-971765	우리자산신탁(주)

※ 발코니 확장대금은 상기 명시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 수납 불가)
※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대금(계약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책임은 관계법령 및 해당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3동 1501호 홍길동 → '01031501홍길동')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계약금,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1)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설치위치		설치개소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7-06-01	입주지정일
시스템에어컨 (LG전자)	기본형	거실+주방+침실1	3	84A	6,820,000	682,000	682,000	5,456,000
				84B	6,820,000	682,000	682,000	5,456,000
				84C	6,820,000	682,000	682,000	5,456,000
	전실기준	거실+주방+침실1 +침실2+침실3	5	84A	9,680,000	968,000	968,000	7,744,000
				84B	9,680,000	968,000	968,000	7,744,000
				84C	9,680,000	968,000	968,000	7,744,000

- 상기 시스템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 금액은 주택 공급 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추가 신청 및 계약변경(신규, 해지)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제공 품목인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및 전용 콘센트 설비 시공비용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 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 시 냉방 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본 시공 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장비로부터 운전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 실외기실은 발코니와 별도 분리되지 않아 전열교환기 및 실외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구, 환기 설비, 천장 구조, 소방시설물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시 평형별 실내기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실외기 1대 설치만 가능하며, 옵션 미선택 후 별도 설치를 위해 실외기 2대 설치가 불가능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침실1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제공되는 냉매배관 2개소는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기본제공되는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이며, 위치는 공사여건으로 변경될 수 있고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에어컨 루버와 입주자가 설치하는 실외기간의 높이 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는 실외기 받침대의 설치는 입주자 공사분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의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용 에어컨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냉매배관은 타입별 본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되며 본 내용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적절한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입주 후 별도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해당 에어컨은 각 실 온도조절기 및 월패드(홈네트워크)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 품목은 본 주택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조명기구, 감지기 등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옵션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기능 등의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 가전제품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설치위치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7-06-01	입주지정일	
빌트인 냉장고 패키지 (냉장, 냉동, 김치)	냉장 : BC1F2AA (LG전자) 냉동 : BC1L2AA (LG전자) 김치 : BC1K1AA1 (LG전자) 냉장고 패널 : 화이트 글라스	주방	84A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
			84B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키큰장 포함
			84C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코너 장식장 포함
식기세척기	DW80F71Y1SEW (삼성전자)	주방	전 타입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
인덕션(3구)	CIRS-FL301FB-S (쿠쿠전자)	주방	전 타입	550,000	55,000	55,000	440,000	-
다기능 복합환풍기	FHD3-C150P (힘펠)	욕실	전 타입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부부, 공용욕실 2개소 설치

※ 가전은 품절, 품귀,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조사, 모델명, 스펙 및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 선택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타입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다기능 복합환풍기 옵션 미선택 시 욕실환풍기는 욕조, 샤워부스 상부에 설치되며, 위치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을 유상옵션으로 선택한 경우 기본 가스쿡탑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치 및 방향이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내부에 가스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방 상부장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냉장고장과 빌트인 냉장고장은 각 기기의 규격에 맞춰 설계되어 내부 유효폭이 서로 다르며,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주변 수납장 및 케이싱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3) 현관 업그레이드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7-06-01	입주지정일
현관 업그레이드	현관 수동 중문 (3연동) + 현관 팬트리 폴딩도어	84A	2,750,000	275,000	275,000	2,200,000
		84B	2,750,000	275,000	275,000	2,200,000
		84C	2,750,000	275,000	275,000	2,200,000

※ 현관중문 시공 시 중문틀 또는 벽체와 다소 이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및 외풍 등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 시 해당 부위는 도배지 및 천장지로 마감되며, 중문 설치 여부에 따라 몰딩, 가구, 디딤판, 벽 패널 등의 위치 및 형태와 신발장 너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시공 시 개폐 방향은 해당 세대의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 시 팬트리 도어는 기본 여닫이 도어로 시공됩니다.
※ 본공사 시 제조사 사정 및 현장 여건에 따라 프레임, 유리, 등 세부 사양과 디자인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4) 가구 및 마감재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7-06-01	입주지정일
바닥	광폭강마루 (W:165)	84A	550,000	55,000	55,000	440,000
		84B	550,000	55,000	55,000	440,000
		84C	550,000	55,000	55,000	440,000
조명 업그레이드	주방 특화조명 + 거실 감성조명	84A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84B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84C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벽 마감 업그레이드	히든도어 + 복도 시트판넬 +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84A	13,200,000	1,320,000	1,320,000	10,560,000
		84B	16,500,000	1,650,000	1,650,000	13,200,000
		84C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다용도실	보조주방	84A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침실2	슬라이딩 붙박이장	84A	2,750,000	275,000	275,000	2,200,000
		84B	2,750,000	275,000	275,000	2,200,000
		84C	2,750,000	275,000	275,000	2,200,000
침실1	4 슬라이딩 도어 + 벽판넬 시스템선반	84A	9,350,000	935,000	935,000	7,480,000
		84B	9,350,000	935,000	935,000	7,480,000
	수납장	84C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드레스룸 업그레이드	벽판넬 시스템 선반 + 벽판넬 파우더장 +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	84A	8,250,000	825,000	825,000	6,600,000
		84B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84C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주방팬트리	폴대형 시스템선반	84A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주방 업그레이드	[와이드주방] 키큰 유리장 + 와이드 유리 상부장 + 상판, 벽 세라믹타일 + 주방 고급 싱크볼 + 주방 고급 수전 + 미드웨이 액세서리 + 상판 매립형콘센트 + 독립형후드	84A	24,200,000	2,420,000	2,420,000	19,360,000
	유리 상부장 + 아일랜드 유리 상부장 + 상판, 벽 세라믹타일 + 주방 고급 싱크볼 + 주방 고급 수전 + 미드웨이 액세서리 + 상판 매립형콘센트 + 독립형후드	84B	19,800,000	1,980,000	1,980,000	15,840,000
	유리 상부장 + 와이드 유리 상부장 + 확장형 아일랜드 + 상판, 벽 세라믹타일 + 주방 고급 싱크볼 + 주방 고급 수전 + 미드웨이 액세서리 + 상판 매립형콘센트 + 독립형후드	84C	25,300,000	2,530,000	2,530,000	20,240,000

※ 벽 마감 업그레이드 옵션 미선택 시 거실 아트월은 600*1,200 타일, 복도 및 주방은 실크벽지로 시공됩니다.
※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벽의 마감의 재료, 두께 및 마감 상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 마감재 및 가구 등의 설치 위치와 마감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 마감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시 히든도어는 본 공사 시 제조사의 사정 및 현장 여건에 따라 하드웨어, 프레임 등 세부사양과 디자인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벽 마감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시 히든도어는 기본형 목도어와 오픈 폭 및 도어 두께, 프레임 및 도어 사양 등이 상이하며, 본 공사시 도어별로 손끼임방지용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벽 마감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시 거실/복도 면의 미려함을 위해 기본형과 도어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이로 인해 욕실 도어 하부 재료분리대 폭 및 형태가 변경됩니다.
※ 주방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주방가구 배치, 마감, 수납 구성 및 하드웨어, 악세사리 적용이 상이합니다.
※ 주방 업그레이드 옵션 미선택 시 음식물 탈수기 뚜껑은 PVC 재질로 시공됩니다.
※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업그레이드 옵션 미선택 시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상판, 300x600 도기질 벽타일 및 기본형 주방수전이 적용됩니다.
※ 84A 타입은 주방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시 기존 주방 팬트리 공간을 확장한 와이드 주방 평면 (견본주택 건립 평면)으로 시공됩니다.
※ 주방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주방 레이아웃, 가구 구성 및 규격, 상판 및 벽체 마감 상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84B 타입은 주방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시 와이드 아일랜드가 설치되며 아일랜드 유리 상부장과 상판 매립형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 주방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시 확장형 아일랜드의 규격 및 가구 구성은 주택형별 평면 및 공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시 주방 TV가 설치되는 구간은 상부장 하부 조명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붙박이장 관련 옵션은 주택형 및 평면에 따라 선택 가능한 품목과 구성이 상이하며, 해당 평면에 적용 가능한 옵션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시 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의 경우 상부 레일과 하단 마감캡 상세 및 하드웨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레일 내 비마감면이 일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유리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유리도어는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2 슬라이딩 붙박이장 선택 시 슬라이드형 가구가 설치되며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도어 개폐 방향과 가구 규격/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욕실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7-06-01	입주지정일
욕실 업그레이드	외산수전류(세면기, 샤워, 욕조) + 외산세면대 + 비데일체형 양변기 + 컬러 샤워부스(실버 무광)	84A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84B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84C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 욕실 업그레이드 옵션 미선택 시 공용욕실에는 투피스양변기 및 반다리 세면기가 설치되며 부부욕실에는 투피스양변기 및 반다리 세면기, 비데, 기본형 샤워부스가 설치됩니다.
※ 샤워부스는 본 공사 시 제조사의 사정 및 현장 여건에 따라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 세부 사양과 디자인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6) DP가구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7-06-01	입주지정일
DP가구	12T 세라믹타일식탁 + 가죽 식탁의자(6EA)	전 타입	8,250,000	825,000	825,000	6,600,000

7)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	우 리 은 행	1005-904-972326	남해종합건설(주)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상기 명시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 수납 불가)
※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책임은 관계법령 및 해당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3동 1501호 홍길동 → '01031501홍길동')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유상옵션 계약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 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 체결 가능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해제는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에 따라 가구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및 주방상판타공 사이즈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네트워크 스위치, 기타 기기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일반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 계약 체결 전 평면도, 배치도, 사업지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매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향후 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교육 등)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기타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 및 향후 변경계획 등을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충분히 열람·확인하여야 함 •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면에 명기되는 면적, 치수 등은 실제 시공 과정에서 일부 경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층간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대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되, 위치의 지정이나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 또한 주차장 등의 시설을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은 불가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개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시 기존 설치 마감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조 변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음 • '계약자'('입주자')가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무관함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AS 운영실을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오염토 검출,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지연 시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입주전 별도 안내 예정임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단지내 (공용)보도는 준공이후 입주민이 관리하여야 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됨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시 등급이 달라지거나, 각 항목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기질 측정 시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측정 진행 예정이며 측정 결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청약신청 또는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 • 「주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견본주택 내 평면도(설계도면), 시방서, 마감자재 목록표를 비치하고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도서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당 사업지 서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31번지 일원)에는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음. 해당 사업의 규모, 건축물의 배치 및 높이, 설비계획, 착공・준공 및 운영 개시 시기 등은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음・진동・분진 및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 후에는 각종 설비의 가동과 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눈부심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세대는 조망・일조 및 사생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계약 전 분양계약서의 기타사항,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여야 함
마감재	• 태양광에 노출되는 모든 마감재 및 가구표면재 등은 표면의 일부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모든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공장제작 제품 특성상 동일 회차 생산품이 아닌 경우 동일한 무늬나 색상 자재의 조달이 불가하여 미세한 이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니며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등)의 시트제품 등 표면마감재는 설치 후 시간 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자재의 경우 자재 특성상 표면 무늬와 색상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특히 바닥 마루는 같은 제품이라 하여도 옹이가 있는 부분이 사용될 수 있으며, 타일의 경우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님.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됨 • 벽체에 부착된 타일은 시공법에 따라 골조벽체와 떠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 입주자 필요에 의한 임의타공 시 파손될 수 있으므로 생활지원센터에 주의사항을 확인 바람
견본주택 /홍보물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은 확장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창호의 열리는 방향, 난간의 위치는 단위세대 평면도를 우선하나 사용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전시 조형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해당제품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 등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현장답사 등 사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견본주택의 사인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홈페이지,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설계관련 주요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 주거공용면적(단, 벽체공용면적 제외) 및 기타공용면적은 단지 전체 면적을 합산 후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단지 내외부 도로(차도 및 보도)의 폭과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수목 및 시설물, 단지 레벨차에 따른 구조물(옹벽, 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동간거리를 확보했으나,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시행자)'가 주관하되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발코니는 관계법령에 따라 초과설치되는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호별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인증(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등)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 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 적용될 수 있고, 적용 부위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준공 시 확정 측량,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사업부지의 경계 및 좌표는 측량기준점 확인 및 경계복원측량 진행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지면적, 대지경계, 시설물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의 도로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이 불가함 • 당 사업은 2024년 9월 27일에 최초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으로, 경과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법적 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 및 품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하지 않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인허가 절차상 각종 심의(신고 포함),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하지 않음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 요구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함 • 분양 시 계획된 야간 경관조명 계획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심의 포함)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관의 색채, 마감재, 디자인 요소는 자재 수급, 시공성 및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관 디자인, 입면 계획, 색채 계획, 옥탑부 디자인, 문주, 측벽, 경관조명 등은 실시공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문주 BI, 단지명 사인물의 위치, 크기, 형태 및 문구는 관련기관 협의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관조명 및 외부조명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점등 범위와 연출 방식은 실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일반사항	• 단지 주변에는 각종 시설[공원, 근생, 공공청사, 도로, 학교, 주거시설, 업무시설, 지하철 등]이 설치되었거나, 추후 개발 계획에 따라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세대에 직·간접적인 피해(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침해 등)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람 • 단지 주변에 설치되는 도로, 공원 및 녹지는 기부채납부지로 단지 내 도로, 공원 및 녹지가 아니므로 입주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동선, 시설물, 경사도 및 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기부채납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민 전용시설이 아님. 어린이집의 운영주체, 운영방식, 이용대상 및 입소 우선순위 등은 관련 법령 및 관할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재활용 쓰레기 집하장은 지하 1층에 설치되며, 재활용 쓰레기 회수에 따른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옥상조경 공간은 조경계획상 경관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었으며, 피난・방재계획, 유지관리, 안전관리 및 법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민의 출입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따라서 옥상정원은 입주민 전용시설 또는 휴게공간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실제 운영방식은 관리주체의 운영기준에 따라 결정됨 • 엘리베이터, 승강기 샤프트, 승강기 홀 및 관련 기계설비와 인접한 세대는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기계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체감 정도가 상이할 수 있음. 이는 단지 및 건축물의 계획 특성에 따른 사항으로 시공사측 책임이 아니며, 계약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단지 내 동파를 방지하기위한 동파방지용 열선, 환기팬, 지하주차장 내 영구배수, 잡배수 등의 배수 펌프 등의 공용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안면인식 로비폰 및 공동현관 출입시스템은 조도, 역광, 마스크 착용, 모자 착용, 안경 착용, 사용자 신체조건 및 시스템 운영환경에 따라 인식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안면인식 출입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생체정보는 관련 법령 및 운영정책에 따라 처리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등록 및 이용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세부 운영방식은 입주 시 관리주체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임 • 준공 시 소방관서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단위세대 및 공용부의 소방시설 위치, 수량 및 설치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유도등, 비상방송설비 등 소방시설은 법정 시설로서 입주 후 임의 철거, 위치변경 또는 성능 저해 행위를 할 수 없음 • 소방안전계획은 소방심의 및 소방기관의 현장실사 등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소방차의 진입과 회전, 정차 등을 위한 조경배치와 동선의 형태, 규모, 재질 및 기타계획이 입주자의 동의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소방안전매트 설치구간을 계획하여야 할 경우, 해당 구간은 조경식재가 불가할 수 있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가능하고, 추후 소방서 협의에 따라 안전매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소방차량 진입을 위해 조경, 식재 등의 위치변경, 경사구간 반영 등이 이뤄질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구간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등)의 통행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 옥상층에는 인명구조공간, 소방시설, 기계설비 및 유지관리 공간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해당 공간의 출입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특히 인명구조공간은 화재 등 비상시 구조활동을 위한 법정시설로 입주민의 휴게, 체류, 행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야간조명 및 측면 로고 설치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등)은 입주자 부담임
	배치	• 동 주변에는 상가, 드롭존, 옥외 출입구 등이 설치되며,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주변에는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상가, 승강기, 계단실, 옥상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구조물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주변에는 DA(지하시설의 급배기구), 음식물쓰레기 보관소, 실외기실, 어린이 놀이터, 공개공지, 공원 등이 계획되어 소음, 진동, 냄새에 따른 환경권 및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상부 옥상조경 구간 또는 관련 공간에 설치되는 실외기 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음 저감, 유지관리 및 사용 편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옥상조경 내에서 위치가 변경되거나 별도의 실외기실 또는 기타 적정 공간으로 이전/변경될 수 있음 • 주동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매연, 백연현상 등의 환경권 및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외 도로(주차장 진출입 램프, 비상차로, 차량출차주의등, 경보음 포함)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출차 주의 경보음, 가로등, 야간 조명에 의해 환경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당사가 시공하지 않는 단지 이외의 시설은 모형에 정확히 표현할 수 없으며, 단지 내 실외기, DA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난간턱 높이, 난간 형태 및 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지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자연경사면 등이 설치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의 급배기구(주차장 환기용, 지하 부대복리시설용, 제연용 등)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부대복리시설, 공공보행통로, 상가 등의 주변에는 실외기, 공조기, 외조기, 급배기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하고, 이로인한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각 동의 진입층 및 공개공지 등 오픈 스페이스의 내부인, 외부인에 의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공급을 위하여 한전패드 스위치,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함 •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옥외 보안등 및 지하/지상층 CCTV는 본공사 시 기능과 감시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물외부 설계도서에 따른 보일러 연통이 설치되어 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및 각종 설비의 급·배기구 등의 위치에 따라 인접 세대 또는 공용부에 소음, 진동, 열기, 냄새 및 배기가스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침수 대비 배수펌프의 비상전원 공급을 위해 지상 1층에 별도의 발전기가 설치되며, 발전기 시험운전 및 비상 가동 시 인접 세대 또는 공용부에 소음, 진동 및 배기가스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주동	• 코어별 승강기(101동 코어당 2대, 102, 103동 코어당 1대)는 인승, 속도가 다를 수 있으며, 코어별 승강기 대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준공도서로 확인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승강로 위치 등은 건축허가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관련법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동별, 라인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공용부창의 경우 모형과는 달리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내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공동주택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 제기를 할 수 없음 • 일부 동 및 세대의 경우 평면구성에 따라 승강기 승강로와 인접하여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바닥 포장,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 등의 여건과 고층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특성상 입주 시 사다리차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또한 단지 배치계획, 동별 접근동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삿짐 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주동 저층부는 외부마감에 따라 공용홀 창호 크기가 기준층 대비 축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공용부, 필로티 등의 계획은 현장 시공 중 상품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지붕구조물은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101동 옥탑, 102,103동 코어 및 옥탑 외벽에 태양광패널이 설치되며 일조여건에 따라 일부 세대 또는 공용공간에서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디자인, 색상, 재료 및 위치 등은 분양홍보물과 모형자료를 참조하되, 본시공 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협의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 색상, 재료, 위치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일부 공동주택 지붕 및 측벽에 의장용 구조물, TV 공청 및 위성 안테나, 피뢰침, 측격 보호형 피뢰침(건물 외벽 보호), 경관조명,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장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눈부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통신품질 확보를 위하여 설치 위치 및 방식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설치 위치 - 지상15층 : EPS/TPS(101동, 102동, 103동), 지하2층 : 휀룸) • 우편함은 각 동의 지상 1층에 설치되어 있음 • 옥상조경 및 시설물 계획(설치구간 및 형태, 마감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외벽 사인물 설치 위치와 개소는 실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됨 • 공동주택 로비 계획(마감재, 디자인, 색상, 천장고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층 및 피난층 PIT 중 일부 또는 PIT 전체의 천장 및 바닥, 벽체 마감은 미 시공됨 • 옥상에는 통기배관이 설치되며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 입면 돌출 장식물, 옥탑장식물, 동 출입구 캐노피 차별화에 의해 일부 채광 및 조망 시 장애가 될 수 있음 • 입면 디자인을 위해 조명, 입면변화, 돌출 구조물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주변 세대의 야간 빛 간섭, 주간 채광 간섭, 햇빛 반사 및 우수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실 시공 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실시공시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 침실 측에 공용계단이 설치되어 공용계단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각 동의 옥탑층에 소화수조, 탈취기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하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table>
<tr><td></td><td></td><td>• 건물의 가스 입상배관은 실외에 설치되어 외부 마감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여건에 따라 가스배관이 지하주차장으로 인입될 수 있음
• 본 건물 공용부에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냉난방설비 및 환기 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임의로 설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함</td></tr>
<tr><td></td><td>부대
복리
시설</td><td>• 부대복리시설은 피트니스, GX룸, 스크린골프,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으로 구성됨
• 각종 홍보물 (분양 카달로그, 커뮤니티 CG 및 동영상, 모형 등)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 운영 등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 내부 프로그램, 마감재, 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상품 및 기능, 구조, 성능 개선, 배관간섭 등으로 인해 평면 레이아웃, 입면, 단면, 천장고,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및 유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부대복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음식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내부 높이)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실제 공사 시 피트니스 운동기구 종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사양, 열리는 창의 크기, 유리 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td></tr>
<tr><td></td><td>지하
주차장</td><td>• 주차장 계획(주차구획별 주차대수 비율 포함)은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 높이,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주차대수 : 305대 (전기차 충전공간 포함)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주차대수</th></tr><tr><td>주거시설</td><td>공동주택</td><td>292대</td></tr><tr><td rowspan="2">비주거시설</td><td>근린생활시설</td><td>12대</td></tr><tr><td>노유자</td><td>1대</td></tr><tr><td colspan="2">주차대수 총합</td><td>305대</td></tr></table>※ 상기 주차대수는 공사여건 및 동선, 기능, 성능개선 등의 사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용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주차장에 설치(급속 3대, 완속 12대)될 예정이며, 여건,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충전설비 설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함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서측에 1개이며, 비주거시설 차량과 같이 이용가능함
• 지하 1층은 ①공동주택 주차장과 ②비주거(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주차장 구간이 주차차단기를 통해 구분되어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 2~3층은 공동주택 주차장으로만 계획되어 있음
•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음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면적 증감, 주차대수 변경 및 위치이동 등을 포함)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지하층에 배치되며 지하층 주차장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생활폐기물 보관소, 연료전지실 등(주거, 비주거시설 포함)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가 발생하여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음</td></tr>
</table>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고 일부 벽면 및 기둥에는 소화전 및 분전반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주출입구 주차 차단기는 차량번호 인식 등 자립형으로 설치되며 위치 등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외기에 면한 주차장 벽체 마감은 블록 공간 쌓기 또는 건식 판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충전시설 설치면 만큼 주차대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 1층 각 동 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함이 1개소씩 설치됨 • 지하 1층 주차장은 소형택배차량 등의 접근을 고려하여 차량동선의 유효높이는 2.8m(주차공간은 2.1m 이상)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 2~3층 주차장은 2.3m 이상(주차공간은 2.1m 이상)으로 계획되어 이를 초과하는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일부분에는 고급화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해 마감재 또는 안내판이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차로 폭 및 유효높이가 줄어들 수 있음 • 준공 후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주동 PIT 일부 공간에 관련 공사 자재를 보관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일부는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각종 배관, 배선 및 가스배관 등의 루트로 활용될 수 있음 •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을 통하는 출입구에는 별도의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른 출입 방식 및 이용 환경을 확인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 덕트,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휀, 펌프 작동 시 배관류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조경	• 단지에는 조경시설이 설치되며, 계절 및 식재환경 등에 따라 벌레, 낙엽, 꽃가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에 키즈스테이션, 음식물쓰레기 보관소, 지하시설의 급배기구, 실외기실,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등), 휴게공간 및 공개공지 등 오픈스페이스가 계획되어 있으며, 시설의 이용 및 외부인 출입 등에 따라 소음, 진동, 냄새 및 인접 세대의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조경의 형태 및 모양 등은 인허가과정, 현장여건 및 설계·시공상 필요에 따라 변경되거나 현장 실시공 과정에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변경·시공될 수 있으며, 생태면적률 및 조경률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법적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 • 단지 내의 조경공간, 식재수종 및 규격,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위치, 구간, 면적, 형태, 자재 및 세부계획(안전펜스의 설치 여부 등)은 인허가과정, 현장여건, 설계·시공상 필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재료・패턴・색상, 도로 선형,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및 경사로 계획 등은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조경식재는 수목의 생육상태, 계절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수종, 규격, 수량 및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수목의 성장 및 관리상태에 따라 조경 경관이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일부 세대의 조망, 채광 및 사생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목의 성장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는 인허가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위치, 규모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 통행 및 비상시 소방활동 등에 따라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옥상조경 및 시설물 계획은 인허가 및 실시공 과정에서 설치 여부, 설치구간, 위치, 면적, 형태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상부 2층 및 3층에 계획된 옥상조경공간은 관리 및 비상시 피난 등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 및 안전상의 사유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인력의 출입에 따라 인접 세대에 사생활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수목의 식재시 뿌리분의 보호 및 고정을 위해 사용되는 철사, 고무바 등의 일부 자재는 시공방법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존치될 수 있음
	주 출입구	• 단지 출입구, 경비실 인접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 측량결과 등의 반영을 위하여 이동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외관의 차별화 디자인 및 색채, 줄눈, 외장재 재질, 커튼월룩프레임 등은 추후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근린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근린생활시설의 입점 업종, 영업행위 및 운영방식에 따라 음식 조리 냄새,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생활 시설	• 근린생활시설 상부 옥상조경 구간 또는 관련 공간에 설치되는 실외기 등 기계설비의 가동에 의해 인접세대에 소음, 진동, 열기 및 기타 환경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입점 업종 및 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확인 및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되어 있으나, 구조심의 조건에 따라 대지경계선 기준으로 하나의 벽체를 공동 사용함. 구조벽체의 두께로 인하여 줄어드는 실사용 면적은 아파트, 상가 각각 상이함 • 상가 인근 도로(주차장 진출입 램프, 차량 출차 주의 경보음 포함)와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출차주의 경보음, 가로등, 야간 조명 등에 의해 환경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단위 세대 관련	일반 사항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84B, 84C타입)는 건립세대(84A타입)와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본 공사 시 강마루의 패턴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제품으로 시공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음 • 냉장고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냉장고 뒤쪽 벽체는 벽지로 마감됩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아님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제조사, 공급업체 및 제품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외산 OEM 제품이 적용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욕실 제외)의 천장고는 2,300mm이며, 마감 구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전기배선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시공됨 • 유상옵션 품목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기준으로 동등 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품목은 공사 시에 선정되며,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기준으로 동등 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공상의 사유로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함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 (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견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 아트월,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음 • 마감재 (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 무관함

		• 본 공사 시 실외기실 루버의 규격, 조작부 형태 및 설치위치, 손잡이, 마감 등 스펙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외부 그릴 모양은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 (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일한 타입이라도 호수에 따라 벽체두께, 창호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건식벽체 접합부 등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균열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우물천장 크기, 높이, 형태, 조명 등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건식벽체 석고보드 구성은 부위별로 상이함 • 이웃세대 확장여부에 따라 바닥, 천장, 벽체 등이 변경되거나 돌출될 수 있음 • 상부세대 욕실배관이 하부세대 욕실 천장속에 설치되며, 상부세대 욕실배관 보수 시 하부세대는 협조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 승강기 샤프트, 승강기 홀 및 관련 기계설비와 인접한 세대는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기계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단지 및 건축물의 계획 특성에 따른 사항으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단위세대 내부 비내력 벽체의 재질은 변경(골조, 조적, 건식벽체 등)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창 및 출입문의 설치 위치, 폭, 높이, 형태, 열림방향, 디테일은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창호 프레임 및 유리 색상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관계 법령에 따라 지상 2~15층 84A, 84C타입 드레스룸 및 84B타입 다용도실에 소방관 진입창이 적용되며, 해당 창호는 일반 창호와 규격, 형태, 개폐방식 및 외관이 상이할 수 있고 소방활동을 위한 법정시설로서 임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 상부 세대 비확장 시 하부 세대의 우물천장 깊이, 커텐박스 깊이,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호수에 따라 카탈로그 또는 견본주택과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트월, 소파 설치위치, 외부조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출입구 단차는 배수를 위한 바닥 구배 시공으로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관, 욕실, 다용도실, 실외기실 등과 실내의 바닥 단차 치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우물천장, 등박스, 커튼박스 위치, 크기,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장고는 실시공시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 벽과 바닥의 타일 나누기는 카달로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붙박이 가구 및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과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인테리어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특히 주방가구(하부장, 아일랜드장 하부), 현관, 신발장, 샤워부스, 욕조, 위생기구 하부에는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음 • 천장 속에 설치되는 설비, 골조, 단열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천장면에 설치되는 전등 등의 위치 및 개소는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세대 및 해당 세대 내부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기둥 일부가 돌출되고 마감이 상이할 수 있음 •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측벽 및 세대간벽의 두께,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가전의 대형화에 따라 신규 전자제품은 주방가구 및 다용도실 등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각 세대 타입별 주방가구 내부 구성, 도어 열림 방식 및 키큰장 사이즈, 하드웨어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타입의 경우 주방가구 측면이 가열대와 인접 시 방열판이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의 디테일, 수납공간 등은 사용성 개선 및 하자 방지 등을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일부 시공될 수 있음 • 타입에 따라 현관 디딤판의 폭 및 사이즈는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가구 및 가전제품 설치 시 실측 치수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부장 수납 공간 최대 확보를 위해 후드 좌우 여백 치수가 비대칭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평면 계획에 따라 주방가구 하부에는 배수 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식기 세척기 등의 가전 제품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전기/ 설비	• 견본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홈네트워크 설비, 화재감지기 등은 실시공 시 관련 법령 및 성능기준에 따라 디자인, 기능, 제품사양, 수량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선택 여부 및 품목에 따라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감지기 등 각종 전기·통신·소방설비의 위치, 수량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조명 밝기 및 조명환경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는 조명기구의 사양, 배치 및 실내 마감조건 등에 따라 실제 세대의 조도 및 조명환경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분전반 및 통합단자함 설치 위치는 법규에 의거해 노출된 장소에 설치되며, 세대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 설치 벽체의 두께, 구조 및 마감 여건에 따라 분전반 및 통합단자함 주변에 별도의 보강재 또는 마감재가 설치되어 벽체 마감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의 위치, 사양, 개소 등이 변경되거나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상가 등에 설치된 조명 또는 외부마감(커튼월룩, 확장창 등)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 IP(전용회선) 사용으로 입주 후 관리비용이 발생됨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 • 욕실 배관방식은 층하 배관으로 적용되며 일부 세대 욕실은 현장여건에 따라 층상배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음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 또는 은폐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구 상부장의 깊이가 조정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가스레인지 좌, 우측 벽을 따라 가구 상부장 뒤쪽으로 은폐되어 설치되거나, 벽체 매립 또는 노출로 시공될 수 있음 • 욕실, 주방 배기 시스템은 직배기 시스템으로 천장내 호스 또는 덕트 등이 설치되고, 외벽에 CAP 마감됨 • 세대 주방 및 욕실 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되거나 인접 세대에서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입주자가 관리해야할 개별 시설물로서 필터 등의 주기적인 교체로 인한 관리 비용이 발생함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외부 환기캡(후드캡)으로 인해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과 욕조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어 해당구간의 온도조절기를 통해 작동하여야 함 • 욕실 내, 드레스룸 등의 난방은 씽크장에 부착되는 난방계통도를 확인하여 해당 온도조절기를 조작하여 침실 또는 별도 공간과 함께 난방하여야 함 • 천장 속 각종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인해 우물천장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배기는 배관 길이에 따라 가동소음 정도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사양, 개소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부부욕실 청소수전의 호스길이는 좌,우측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음 • 오수, 배수, 우수배관의 시공위치는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화장실 물내림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욕실 내 습도, 온도가 높아 양변기 물탱크 주변에 자연현상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발코니 구간에는 우수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생소음은 하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배수구 미사용시 (장기간 미사용하여 악취 방지를 위한 봉수의 물이 증발하는 경우) 배수관 내부의 악취가 전달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구에 봉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배수구에 물을 흘려 봉수를 유지해야함

		• 렌지후드의 위치에 따라 가동 시 소음, 진동이 침실로 전달될 수 있음 • 환기시스템 및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가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 갤러리(루바)창의 상부에 장비, 설비배관, 주름관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배관 설치, 환기덕트 설치, 화장실 배기호스 등에 따라 커튼박스의 깊이 및 너비가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 천장에 설비배관(욕실/주방배기/세대환기)이 노출될 수 있고, 단천장이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 방범을 위하여 101동 2~3층, 102~103동 3~4층 및 최상층 세대에는 동체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배선기구, 홈네트워크설비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음 • 세대 내 가구 일체형 조명기구와 같은 복합기구 적용 시, 해당 기구는 일괄소등 스위치의 동작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기, 앵커시공, 드릴 작업 시 안전사고 및 시설물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 급수, 가스,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천장마감재가 불연재 및 준불연재, 난연재로 마감된 이중 천장 내 전기박스 커버 설치는 제외함 • 세대 내 전기기구 내부 방음코킹은 시공 제외함 • 세탁실에 설치된 2구 콘센트의 최대 허용전류는 16A(2구 합산 기준)임. 세탁기와 건조기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제품의 소비전력 합계가 콘센트의 허용용량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소비전력 및 설치 환경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시기 바람. 허용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콘센트 및 플러그의 과열, 손상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입주 후 대용량 전열기기 사용 시 일시적인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전기기기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월패드, IoT 서비스 및 스마트홈 기능은 세대 내 유·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서비스 가입 및 이용요금은 입주자의 부담임 • 홈네트워크, IoT 및 스마트홈 서비스는 통신환경, 스마트폰 기종, 운영체제(OS), 관련 앱 및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정책 등에 따라 일부 기능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제공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통신비 및 부가서비스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됨(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환기디퓨져 및 세대 내 스피커는 본 공사시 도서 기준으로 설치되나 시공 중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으니 별도 확인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생기구, 수전류(발코니수전 포함), 악세사리, 환기디퓨져, 시스템에어컨(유상옵션), 환기유니트, 바닥배수구, 선홈통,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바닥드레인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대피공간 내부에는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설치되며, 디자인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화재 시 하층세대로 피난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 **견본주택 안내**

해링턴 플레이스 문래 견본주택	
	■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위치안내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40 - 운영기간 : 분양 종료 시까지(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대표번호 문의 후 방문)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의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관람 가능 여부를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대표번호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방침에 의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견본주택 입장 및 상담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PC,모바일)	**https://www.해링턴플레이스문래.com**
분양문의	**☎ 02-3463-7774 (10:00 ~ 17: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